

의안번호	2216147
의 퇴 인	전용기 의원
회 답 일	2026. 1. 28.
추계번호	26F0281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부부 동시사망시 상속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조의2(부부 동시사망시 상속공제)	○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상속공제 신설 － 대상: 부부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－ 공제내용: 다음 ①, ② 중 큰 값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남편이 먼저 사망할 경우 아내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② 아내가 먼저 사망할 경우 남편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9조의2 (부부 동시사망시 상속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부부가 동일한 위난으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가 이시(異時)에 사망한 것과 같이 배우자 상속공제에 상당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(안 제19조의2)
- 현행 부부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, 「민법」 제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부간 상속이 성립되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를

적용받지 않음

- 개정안은 「민법」 제30조에도 불구하고, 부부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□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위난으로 발생하는 부부 동시사망의 건수와 해당 부부의 총상속재산가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위난의 우발성과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- 부부가 동시사망하는 위난의 발생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향후 추이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 - 또한, 향후 위난으로 인하여 동시사망하는 부부의 수와 이들의 총상속재산가액 및 부부간에 이시사망시 적용되는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추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해당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－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, 2024년 기준 질병 외의 외부적 요인으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인원은 14,031명 수준이나, 이 중 동시사망하는 부부의 수는 구분되지 않음
- ※ 참고로, 최근 5년간 질병 외의 외부적 요인으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인원 추이는 다음과 같음

[표 1] 질병외의 외부적 요인으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인원 추이

(단위: 명)

	2020	2021	2022	2023	2024
합계	11,285	11,434	12,357	13,074	14,031
－ 남자	7,024	7,141	7,792	8,297	8,868
－ 여자	4,261	4,293	4,565	4,777	5,163

주: 해당 통계는 운수사고, 추락사, 익사, 화재사고,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등, 자살, 타살 및 기타 외부적 요인을 포함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사망원인통계」

- － 동시사망하는 부부의 수 뿐만 아니라 이들의 총상속재산가액 및 부부간에 이시사망시 적용되는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재산관련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해당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